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명칭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종류		
	수량		
	사유		
	반송기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1년 [] 2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에 대한 검사의 전부 생략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검사생략 소명자료 1부 2.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안전관리계획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반송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